

# 간미역 대일 수출제도 개선방안

신영태·박성쾌

빈

면

## 머리말

本研究報告書는 水產廳의 委囑을 받아 當研究院 水產經濟室 研究팀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政策報告書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간미역은 1972년 日本에 11千弗(6千弗)이 試驗輸出된 이래 그 量과 金額이 계속 증가하여 1989년에는 24,500千弗(51,313千弗)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對日 輸出物量의 증가는 日本 미역生產漁家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1977년부터 日本은 輸入物量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매년 행해지는 韓日間 民間會談에서 輸出上限線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輸出秩序의 확립을 위해 生產, 加工, 輸出物量의 配定制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物量配定制가 관련업계의 協助 및 行政官廳의 감독 소홀로 운영의 合理性과 透明性이 결여됨으로써 간미역 輸出을 둘러싸고 利害當事者間에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고려하여 本研究에서는 간미역의 生產, 加工, 輸出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摩擦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간미역產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制度改善 및 政策方案 모색에 중점을 두었다.

本研究의 수행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커다.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신 水產廳 貿易課, 미역加工協會, 水產物 輸出組合 관계자와 研究草案 檢討會議時 유익한 討論을 해 주신 參席者 여러분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끝으로 本研究를 수행한 水產經濟室 研究팀의 勞苦를 치하하며, 本研究結果가 아무쪼록 간미역의 對日 輸出制度 改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0. 7.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許 信 行

빈

면

## 目 次

I. 問題의 提起 .....	1
II. 간미역 生產 및 輸出現況	
1. 原藻 生產, 加工 및 輸出體系와 節次 .....	2
2. 生產實績 .....	3
3. 輸出實績 .....	5
III. 日本의 간미역 輸入 및 國內 消費實態	
1. 간미역 輸入 .....	7
2. 國內 消費實態 .....	9
IV. 간미역 加工, 輸出制度와 問題點	
1. 加工, 輸出制度의 變遷 .....	10
2. 加工, 輸出制度의 問題點 .....	12
V. 國內物量 配定制度의 代案別 影響檢討	
1. 原藻收買 유지와 加工 및 輸出物量配定 폐지 .....	18
2. 原藻收買 및 加工物量配定 유지와 輸出物量配定 폐지 .....	19
3. 原藻收買 및 輸出物量配定 유지와 加工物量配定 폐지 .....	20
4. 原藻收買, 加工 및 輸出物量配定 전부 폐지 .....	20
VI. 加工, 輸出制度 改善方案	
1. 對日本 輸出物量合議制 폐지 추진 .....	21
2. 國內物量 配定制度의 개선 .....	22
3. 간미역 製品의 品質向上과 高次加工 新製品 개발 .....	23
4. 協業加工業體의 直加工 유도 .....	24
5. 違法行爲에 대한 制裁 강화 .....	24
6. 國內消費 擴大를 위한 業界의 共同努力 .....	24
附錄 業務協議會 討論內容 .....	26

빈

면

## I. 問題의 提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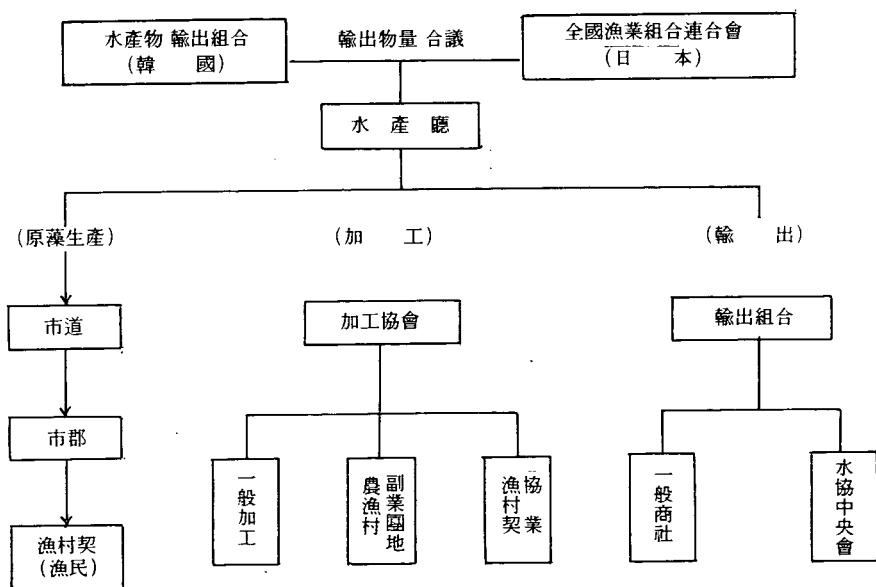
- 우리 나라 간미역의 對日 輸出은 1972년 11%을 試驗輸出한 것이 효시가 되나 그후 輸出物量의 증가로 日本 漁民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1977년부터 양국간 輸出物量을 합의하고, 이 범위 내에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국내적으로는 1979년까지 간미역의 加工, 輸出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많은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1980년부터는 지역별로 구분, 加工物量을 배정해 왔으며, 1982년부터는 加工物量을 加工業體에, 輸出物量을 輸出業體에 배정하는 현재의 제도가 정착되었다.
-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미역의 加工, 輸出制度를 개선해 왔으나 아직까지 利害集團間 原藻 收買, 加工 및 輸出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즉, 民主化 · 地方化 時代를 맞이하여 生產者團體인 水協에서는 자신들이 生產한 미역을 직접 加工, 輸出하려 하고 있고, 加工 및 輸出業界에서는 現行 物量配定制度의 폐지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現制度 준수시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현제도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對日 輸出物量의 한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韓日間 輸出物量의 合議制 폐지를 포함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輸出制度의 개선만으로는 현재 야기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內需擴大 등 관련분야에 대한 補完對策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II. 간미역 生產 및 輸出現況

### 1. 原藻 生產, 加工 및 輸出體系와 節次

#### 가. 生產, 加工, 輸出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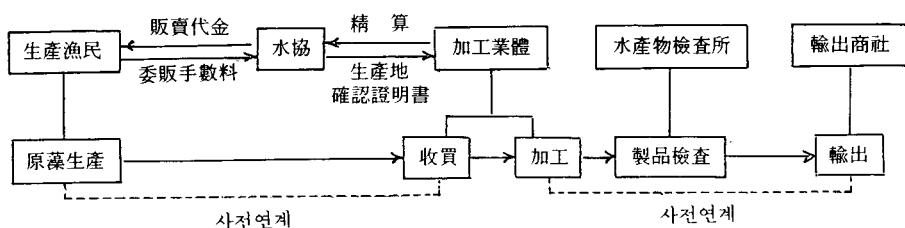
- 간미역의 對日 輸出物量은 매년 韓國의 水產物 輸出組合과 日本의 全國漁業組合連合會間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 水產廳에서는 同合議物量 범위 내에서 原藻物量을 道別로 배정하고, 業體別 加工物量配定은 加工協會에, 商社別 輸出物量配定은 水產物 輸出組合에 위임하고 있다.



- 水產廳에서 市道로, 市道에서 市郡으로 原藻物量 配定時 免許面積 (生産計劃), 미역加工 및 輸出實績을 고려하고, 市郡에서 漁村契로 原藻物量 配定時 免許地內施設臺數, 原藻 生產作況 및 販賣實績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加工協會의 業體別 加工物量 配定과 水產物輸出組合의 商社別 輸出物量 配定에서는 輸出實績 및 輸出秩序 문란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 나. 生產, 加工, 輸出節次

- 輸出用 간미역의 原藻는 漁村契(漁民)별로 배정하되 事前에 특정 加工業者와 연계, 이들에게 정해진 價格으로 판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加工業者는 仲買人資格으로 收買에 참가하여, 販賣代金은 水協에서 지불하고 있다.
- 水協에서는 加工業者가 정산한 收買分에 한하여 生產地 確認證明書를 발급하는데, 加工業者는 加工 완료한 製品에 同書類를 첨부하여 水產物檢査所에서 製品檢査를 받고 合格品에 한하여 수출을 하게 된다.
- 製品의 輸出窗口 역시 사전에 연계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輸出物量을 배정받아 輸出을 할 수 있는 업체는 水協中央會를 포함, 33個社에 이르고 있다.



#### 2. 生產實績

##### 가. 年度別 生產量

- 우리 나라 미역 生產量은 對日 간미역 輸出 이전인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自然產으로 50,000㎘ 수준을 넘지 않았으며, 그 후 對日 간  
미역 輸出이 시작됨에 따라 미역 生產量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에  
는 養殖產으로 거의 300,00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연도	계(A)	자연산(B)	양식산(C)	단위 : ㎘, %
			C/A	
1965	33,236	31,979	1,257	3.8
1970	45,045	38,420	6,625	14.7
1975	132,328	20,302	112,026	84.7
1980	206,391	10,244	196,147	95.0
1985	262,816	6,380	256,436	97.6
1988	288,368	6,711	281,657	97.7
1989	285,668	4,812	280,856	98.3

#### 나. 地域別 간미역 生產量

- 輸出用 간미역 生產量은 1989년 24,500㎘이었으나, 1990년에는 300  
㎘ 증가한 24,8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1990년 경우 市道  
별로는 전남이 21,796㎘으로 전체의 87.9%, 경남이 9.9%인 2,446  
㎘을 차지하고 있다.
- 市郡별로는 완도가 17,593㎘(전체의 70.9%)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 양산의 2,093㎘(8.4%), 진도의 1,788㎘(7.2%)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1989	1990	증 감
전국	24,500	24,800(100.0)	300
전남계	21,529	21,796( 87.9)	267
완도	17,385	17,593( 70.9)	208
장진	10	18( 0.0)	8
진도	1,765	1,788( 7.2)	23
해남	102	102( 0.4)	0
고흥	1,089	1,114( 4.5)	25
장흥	806	810( 3.3)	4
여천	372	372( 1.5)	0

	1989	1990	增減
부산	289	293( 1.2)	4
경남계	2,420	2,446( 9.9)	26
양산	2,071	2,093( 8.4)	22
통영	139	139( 0.6)	0
울주	210	214( 0.9)	4
경북계	262	265( 1.1)	3
포항	100	103( 0.4)	3
영일	162	162( 0.7)	0

註 : 1990년은 加工配定物量임.

#### 다. 加工形態別 간미역 生產量(1989)

- 1989년 總生產量 중 一般加工이 88.6%, 漁村契協業 및 農漁村副業團地加工이 11.4%를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1990년에 들어 前年對比 增加量 300㎘ 천량을 漁村契協業 및 農漁村副業團地加工에 배정함으로써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2.5%로 증가하였다.

	計	一般加工	漁村契協業	農漁村副業團地	단위 : ㎘, %
전국	24,500	21,700(88.6)	1,900(7.9)	900(3.7)	
전남	21,529	19,199	1,550	780	
부산	289	289	—	—	
경남	2,420	2,000	300	120	
경북	262	212	50	—	

### 3. 輸出實績

#### 가. 年度別 對日 輸出實績

- 1973년 1,585㎘에 불과하던 對日 輸出物量이 養殖技術의 급속한 發達로 生產量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977년부터 20,000㎘을 초과 했다.

- 지역별로는 全南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했으나, 莊島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증가하여 현재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계(A)	전남(B)	완도(C)	기타(D)	B/A	C/A	D/A	단위 : %, %
1973	1,585	799	455	786	50.4	28.7	49.6	
1977	23,724	22,775	16,203	945	96.0	68.3	4.0	
1981	25,270	22,713	16,668	2,557	89.9	66.0	10.1	
1985	23,500	20,730	16,780	2,770	88.2	71.4	11.8	
1989	24,500	21,529	17,395	2,971	87.9	71.0	12.1	

#### 나. 1990년 輸出商社別 輸出計劃

- 1990년 간미역 輸出物量을 배정받은 33개 업체 중 水協中央會가 가장 많은 2,749%을 차지하고 있는데(전체의 11.1%), 이것은 1989년의 597%에 비해 2,200% 증량된 것이다.
- 總輸出物量의 5% 이상을 수출하는 상위 6개 업체의 輸出物量은 11,260%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상사	수출배정물량	구성비
계	24,800	100.0
수협중앙회	2,749	11.1
장성산업	2,488	10.0
삼정화공	1,727	7.0
육기상사	1,661	6.7
(주)진홍	1,331	5.4
인산산업	1,304	5.3
(주)삼창	1,006	4.1
(주)삼해	970	3.9
(주)계산	951	3.8
효성불산	906	3.7
동지산업	899	3.6
삼화불산	877	3.5
삼창식품	789	3.2
기타 20개업체	7,143	28.8

### III. 日本의 간미역 輸入 및 國內 消費實態

#### 1. 간미역 輸入

##### 가. 輸入의 制度的 根據

- 日本 通商省의 輸入貿易管理令 第3條 第1項 및 第2項이 기초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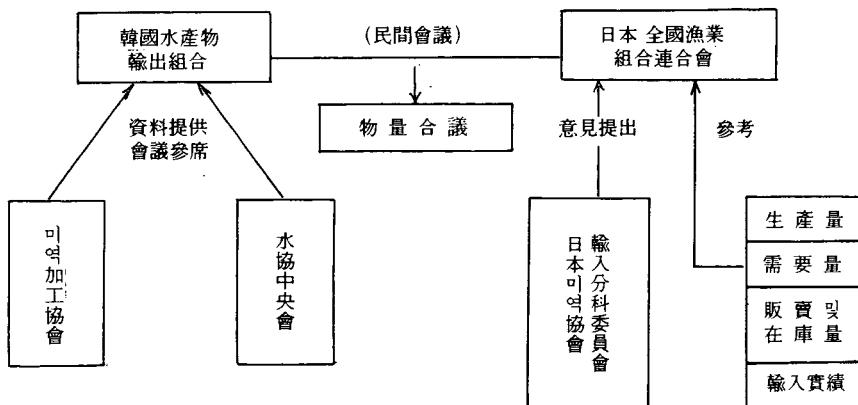
##### 나. 輸入物量合議制 實施背景

- 輸入物量合議制를 실시하고자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自由貿易이 세계 전체로는 厚生增大 效果를 가져다 줄지 모르나 한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은 아니라는 認識이 전제가 되고 있다.
- 同制度를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① 國內價格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漁家所得을 확보해 줌과 동시에 최소한의 自給率을 유지하고, ② 輸出國의 超過供給狀態가 불안정하여 海外價格下落이 自國產業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며, ③ 외국의 供給 상태가 非彈力的이어서 關稅에 의한 輸入量의 감축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 간미역 輸入物量合議 過程

- 매년 韓國과 간미역 輸入物量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日本의 全漁連(全國漁業組合連合會)은 日本 미역協會 輸入分科委員會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國內生產量, 需要量, 販賣 및 在庫量, 輸入實績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다.

- 반면 韓國側 協商窓口인 水產物 輸出組合에서는 利害當事者인 미역 加工協會나 水協(中央會)으로부터 資料를 제공받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會議에 참석하여 협의하고 있다.



#### 라. 輸入商社別 輸入現況(1989)

- 1989년 日本의 對韓 간미역輸入商社는 총 44개사에 이르고 있으나, 가장 많은 物量을 수입한 業體는 Sanko Bussan社로서 전체의 30.5%인 7,471Mt을 수입하였다.
- 總輸入物量의 5% 이상을 수입한 業體는 총 6개사인데 이들의 輸入物量은 전체의 69.5%인 17,033Mt, 輸入金額은 35,747千달러에 이르고 있다.

단위 : kg, 달러

輸入商社名	數量	金額
計	24,499,861(100.0)	51,313,426.44(100.0)
Sanko Bussan	7,470,596( 30.5)	15,960,099.40( 31.1)
Tominaga Boeki	3,772,593( 15.4)	7,848,144.66( 15.3)
Tokan	1,507,741( 6.2)	3,090,869.05( 6.0)
Daiei Taigen	1,448,756( 5.9)	2,969,499.80( 5.8)
Karatsu Uoichiba	1,407,485( 5.7)	2,885,294.25( 5.6)
Inoue Kaisanbutsu	1,426,325( 5.8)	2,993,345.00( 5.8)
기타 38個社	7,466,365( 30.5)	15,566,176.28( 30.3)

## 2. 國內 消費實態

### 가. 消費 製品形態

- 소금을 20~23% 함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輸出 간미역은 일본에 도착후 40% 정도로 가미되어 그 상태로 소비되거나 각종 低次 또는 高次加工品의 原料로 소비되기도 한다.
  - 1次 加工品 : 鹽藏 상태의 간미역, 구체적으로는 8종류 정도
  - 2次 加工品 : 잘게 썰은 미역, 분말미역, 향료첨가 미역 등 1次 加工品에서 추가로 처리, 가공된 製品.
  - 3次 加工品 : 2次 加工品에서 다시 製品形態를 완전히 변형시키거나 化學的 處理를 한 것으로서 미역술, 미역음료, 미역파자 등.

### 나. 製品形態別 市場規模

- 현재 日本의 미역市場 規模를 보면 鹽藏미역이 전체의 52.6%, 썰어 말린 미역이 26.8%, 素乾品이 7.8% 등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단순한 형태의 消費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 그러나 최근의 증가추세를 보면 鹽藏미역이나 素乾品과 같은 低次 加工品은 絶對量 자체가 별로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썰어 말린 미역이나 야채국과 같은 高次加工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消費패턴 자체가 高級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억엔, %

	1981	1985	1989
計	350(100.0)	465(100.0)	513(100.0)
간(鹽藏)미역	220( 62.9)	258( 55.5)	270( 52.6)
乾 小 計	90( 25.7)	142( 30.5)	175( 34.1)
燥 素 乾 品	40( 11.4)	42( 9.0)	40( 7.8)
品 썰어 말린미역	50( 14.3)	100( 21.5)	135( 26.8)
미 역 스 프	-	30( 6.5)	20( 3.9)
야 채 국	5( 1.4)	5( 1.0)	11( 2.1)
기 타	35( 10.0)	30( 6.5)	37( 7.2)

## IV. 간미역 加工, 輸出制度와 問題點

### 1. 加工, 輸出制度의 變遷

#### 가. 輸出 沿革

○ 우리 나라 간미역은 1972년에 처음으로 11%(6천달러)이 日本에 試驗輸出된 이래, 다음해인 1973년 輸出量이 1,585%으로 급증하자 日本漁民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74년 韓日水產廳長間 非公式會談에서 우리 나라의 간미역輸出을 自律規制로 합의하였는데, 이것이 현행 제도 정착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 후 몇 차례의 실무접촉을 거쳐 1977년부터 양국간 합의에 의해 輸出入物量을 결정하고 日本에서는 輸入物量 事前 確認制를 실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나. 輸出制度變遷

年 度	內 容	問 題 點
1979까지	○自由收買, 加工, 輸出	○晚期產 地域 輸出機會 상실 ○原藻는 輸出用·內需用 미구분, 去來價格으로 收買
1980	○地域別 區分, 加工物量配定 - 水產廳→市道(시군)→加工業體	○加工業體 수매지연으로 收買價格 불안정 ○作況 不良地域의 未輸出事例 발생
1981	○輸出促進위해 合議物量配分 조정 - 80%自由競爭輸出	○과열 加工, 輸出競爭 發生 - 先輸出競爭으로 인한 品質低下, 크레임 發生으로 生產漁民 被害(收買)

年 度	内 容	問 題 點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業體配定(晚期產조절 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代金 마불)</li> <li>- 조기 船積競爭으로 輸送大混亂사태 발생</li> <li>- 과당 競爭輸出로 合議物量 超過輸出</li> <li>- 輸出終了後 國內價格 폭락</li> <li>- 先輸出競爭으로 偽裝輸出検査事例 發生</li> <li>○ 無免許養殖 성행 및 加工工場 난립</li> </ul>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域別로 原藻·加工·輸出 物量 구분,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原藻 : 市道(市郡) → 漁村契(漁民)</li> <li>- 加工業體 : 市道(市郡) → 加工業體</li> <li>- 輸出 : 輸出組合 → 輸出商社</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加工工場 許可權者와 物量配定權者 동일(市長, 郡守)로 工場난립 초래</li> <li>○ 原藻收買過程에서 加工業者와 生產漁民間 收買價格에 대한 마찰 발생</li> </ul>
1983~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加工物量配定權者 조정 (市道知事 → 미역加工協會)</li> <li>○ 原藻收買單價 事前決定施行 (82원/kg)</li> <li>○ 加工業者와 漁民 마찰 해소를 위해 地域有關機關 協議會 구성, 운영</li> <li>○ 加工, 輸出業體間 連繫 運營制 채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漁民과 加工業體間 마찰 상존</li> <li>- 漁民 : 低級品도 收買토록 요구</li> <li>- 加工業體 : 低級品(規格未達) 減量 주장</li> <li>○ 漁民所得 增大量 위해 漁村契도 加工參與 요구(漁村契 協業加工制度 도입)</li> </ul>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收買時 마찰해소를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收率, 收買單價는 地域協議會에서 결정 (市郡主管 : 82 → 85원/kg)</li> <li>- 加工工場別 收買地(漁村契)를 지정</li> </ul> </li> <li>○ 漁村契協業 加工物量 新規配定(500k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漁民의 原藻 收買價格 引上 要求</li> <li>○ 漁村契 協業用 加工物量 增量 要求</li> <li>○ 農漁村副業團地用 加工物量도 配定 要求</li> </ul>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漁村契協業 加工 物量 增量 (500 → 1,000kg)</li> <li>○ 副業團地 加工物量 新規 配定(700kg)</li> <li>○ 原藻 收買價格 引上 (85 → 97원/k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漁村契協業 및 副業加工 配定物量 增量과 既存 加工業界의 配定物量 減少에 따른 반발, 물의 야기</li> <li>○ 漁村契 協業, 副業團地 物量 增配 要求</li> </ul>

年 度	内 容	問 題 點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漁村契協業 및 副業團地 加工物量 增配(2,500t)</li> <li>○原藻 收買價格 引上 (97→114원/k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漁村契協業加工物量를 계속 增配 要求</li> <li>○既存 加工業體 と 新規 및 小量業體의 加工物量 增量 요구</li> </ul>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漁村契協業 및 副業團地 加工物量 增配(2,800t)</li> <li>○原藻 收買價格 引上 措置 (114→125원/k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對日 간미역 輸出不振 (24,500t中 21,251t輸出)</li> <li>- 미역原藻 病蟲害 大量發生 및 早期產 未成熟 原藻製品 輸出(2월 : 1,000t)我國產商品聲價下落으로 日本側 在庫 累增</li> <li>- 日本 輸入商의 일시 大量輸入止揚, 輸入量 감소</li> <li>○加工業者의 對漁民 原藻代金 精算 遲延 (1989. 6. 30 현재 : 2,367백 만원 → 1989. 12. 14 完拂)</li> </ul>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輸出促進을 위해 主加工 輸出時期 이후(5.1부터) 未加工 輸出物量은開放, 자유경쟁케 함</li> <li>○原藻 收買代金은 水協이 漁民에게 直拂토록 하므로써 未精算 事例 防止</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韓日間 合議物量(24,500t) 全量이 早期輸出됨(1989. 5. 30)</li> <li>○한정된 對日 輸出物量을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制度改善(또는 現行維持) 주장, 의견 대립</li> </ul>

## 2. 加工, 輸出制度의 問題點

### 가. 兩國의 物量合議制 실시

- 日本으로서는 他規制方案에 비해 직접적이고 강력한 自國漁民 保護效果가 있는 반면 우리 나라로서는 輸出物量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實輸出可能量을 사전에 알 수 없어 經營不安定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制度를 일방적으로 廢止한다 하더라도 國內外的으로 다소의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성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國際的	國內的
○ 日本의 自國漁民 保護위한 새로운 規制 유발	○ 輸出用 原藻 收買價格制 봉괴 가능성 증대
- 高關稅	○ 輸出價格 下落 및 輸出業者の 日本 예 속 가능성
- Safe Guard 발동	○ 早期產 미역 위주의 수출로 晚期產 지 역 漁民에 타격
- 他商品 연계 규제	
- 非關稅장벽 강화 등	

#### 나. 日本市場의 限界와 中國產과의 競爭

○ 日本市場에 있어 간미역의 供給量은 1970년대 중반 이후 40,000~46,000㎘으로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금후에도 青壯年層의 간미역에 대한 選好度가 낮아 지속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年 度	生 產 量 <sup>1)</sup>	輸 入 量	供 紹 量	단위 : ㎘
1976	16,893	21,564	38,457	
1978	13,689	14,149	27,838	
1980	15,138	24,206	39,344	
1982	15,778	23,870	39,648	
1984	15,278	27,447	42,725	
1986	18,083	28,758	46,841	
1988	14,701	26,930	41,631	

1) 1988年 利用配分實績(養殖產의 2/3를 간미역으로 加工)을 이용하여 추정한 것임.

○ 또한 中國產 製品이 아직 品質面에서는 다소 뒤떨어지나 價格의 우위를 바탕으로 日本市場을 빠른 속도로 침식하고 있어 금후의 輸出增大에 위협이 되고 있다.

年 度	輸 入 物 量				輸入單價(kg당)		
	계(A)	한국(B)	중국(C)	B/A	한국(D)	중국(E)	E/D
1976	21,580	21,394	186	99.1	168	95	56.5
1980	21,239	21,239	0	100.0	291	—	—
1984	24,911	23,500	1,411	94.3	309	211	68.3
1988	28,754	24,500	4,254	85.2	271	105	38.7

## 다. 國內 物量配定을 둘러싼 利害集團間 갈등

- 현행 제도상 生產, 加工 및 輸出物量을 각각 별도로 配定하고 있으나 資本 및 經驗의 축적과 社會與件의 변화로 둘 이상의 分野에 동시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利害集團間 主張과 그 이유는 다음 表와 같다.

	生 產 漁 民	加 工 業 體	輸 出 業 體
主 張	加工 및 輸出物量 대폭 水協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漁村契協業加工 철 폐</li> <li>○輸出窓口 완전 개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現制度 존속, 일부 내 용補完</li> </ul>
理 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表面的 理由 -漁民保護 育成</li> <li>○內面的 理由 -配定物量 轉賣로 不 勞所得 획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直加工 않고 配定物 量轉賣</li> <li>○配定物量 購入時 부 담</li> <li>-原藻減量 불가피</li> <li>○加工協會 非會員의 不法行爲 統制 불가</li> <li>○直輸出로 中間費用 절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現制度는 여러 차례 改定, 補完된 것임</li> <li>○現制度 폐지 시 過當 競爭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 예상</li> </ul>

## 라. 原藻收買時 減量是非 문제

- 輸出用 간미역 原藻收買時 가장 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가 生產 漁民과 加工業者間의 減量是非이다.
- 이 문제에 대한 兩者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 쌍방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生 產 漁 民 主 張	加 工 業 者 主 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加工業者들, 價格下落 유도 위해 고의 로 收買 지연</li> <li>○不正한 方法에 의한 檢斤 사례 성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協業加工物量 구입시 原藻 低價收買해 야 채산성</li> <li>○生產漁民 스스로가 低價販賣條件으로 配定物量 이상 구매 요구</li> <li>○標準規格(엽체 60cm이상, 줄기 5cm이 내) 未達原藻 납품</li> </ul>

### 마. 地域別 原藻 및 加工物量 配定의 불균형

- 市郡別로 原藻 및 加工物量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上호불균형으로 해당지역 漁民의 반발을 야기시키고 있다.
- 즉, 금년 경우 완도 지역은 漁場整理로 인해 原藻配定物量이 감소 했으나 加工物量은 종전과 같이 배정함으로써 加工業者 및 生產漁民 모두 불만인 반면 他地域 경우 加工能力이 없는 곳에 原藻收買物量을 배정하거나 加工能力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등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 바. 原藻質의 하락

- 최근 미역 原藻 상태가 불량해지고 있어 간미역제품의 질을 떨어뜨 리고 있는데, 1988년에는 優良原藻 부족으로 조기산 未成熟原藻의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우리 나라 製品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收買代金精算이 지연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 부분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密殖, 超過施設 등으로 養殖場이 노화됨에 따라 각종 病害가 빈발하는 데 주원인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사. 協業加工事業의 虛實

- 協業加工 物量配定의 당초 취지는 現地漁民의 雇傭增大와 生產原藻의 附價價值 提高에 있었다.
- 그러나 協業加工에 대한 個人加工業者の 主張을 보면 대부분 貨加工形態나 配定物量을 轉賣함으로써 당초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실제 조사결과 완도지역 協業加工 25개소 중 工場을 設置한 漁村契는 3개소에 불과하였다.
- 이러한 協業加工의 工場未設置 이유를 보면 配定된 加工物量이 적어 採算性 確保에 어려움이 있고, 전액 自己資金으로 충당해야 하는 관계로 施設資金이 부족하며, 加工物量의 長期確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漁村契 協業加工에 있어 直加工이 어렵다 하더라도 配定物量의 轉賣 등으로 얻게 되는 收益을 流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1989년 경우 加工物量 4%당 轉賣收益이 10만원으로 漁村契當 400~5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나, 대부분 收益金을 他事業에 전용하거나 共同分配하고 있었다.

#### 아. 간미역 輸出窗口의 문제에 대한各界의 主張과 長短點

	開 放	水 協 中 央 會	輸出組合(현행)
찬 성 자	加工業體	生産漁民	輸出組合
장 점	參與擴大	○交涉力 강화 ○漁民立場 대변	輸出專門化
단 점	○過當競爭 ○零細性	專門性 결여	配定物量의 利權化

#### 자. 違法行爲에 대한 制裁措置의 문제점

○ 現行 制度上 生產漁民, 加工業者, 輸出業者 모두 정해진 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制裁를 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를 위반하는 事例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摘發 및 制裁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利害當事者間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生 產 漁 民	加 工 業 體	輸 出 業 體
發生事由	○정당한 이유없이 原藻販賣 기피할 때 ○配定物量을 轉賣하는 등 부당한 行爲를 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原藻收買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감량할 때 ○直加工을 하지 않을 때 ○原藻收買代金을 정산하지 않을 때	○業體別 配定物量을 직접 수출하지 않을 때
制裁內容	○배정된 原藻物量을 회수하거나 조정 배차	○原藻收買를 제한하거나 仲買人으로의 가입 배제 ○배정된 加工物量을 회수 또는 축소 조정	○輸出物量 配定對象에 서 제외 ○기 배정 물량을 회수 또는 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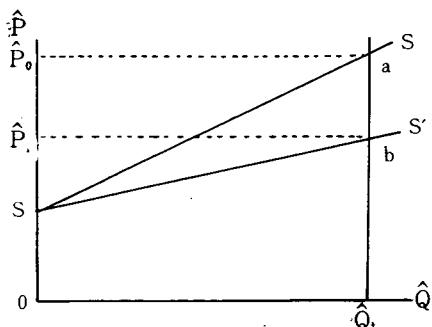
### 자. 輸出 위주의 生產體制

- 현재 간미역 加工業은 輸出에만 주력하고 內需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간미역加工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 할 수 없다.
-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데는 國內外 가격격차가 큰 데 主原因이 있으나, 國內消費擴大를 위한 노력도 부족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V. 國內物量配定制度의 代案別 影響檢討

### 1. 原藻收買 유지와 加工 및 輸出物量配定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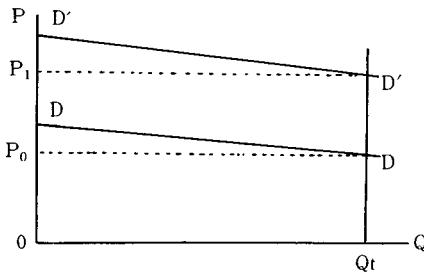
- 加工, 輸出部門에 있어서는 業體數가 증가하고 이들간에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輸出價格 및 輸出手數料(현재 3.5% 정도)가 하락하고, 裏面契約 등으로 현행의 指導價格制(check price system)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hat{P}_0$	: 物量配定制 폐지전 간미역 輸出價格
$\hat{P}_1$	: 物量配定制 폐지후 간미역 輸出價格
SS	: 物量配定制 폐지전 간미역 供給曲線
SS'	: 物量配定制 폐지후 간미역 供給曲線
$\hat{Q}_t$	: 輸出合議物量

- 原藻部門에서는 加工部門으로부터 需要增加要因이 작용하여 原藻價格의 上昇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단,  $\left\{ \begin{array}{l} P_0 : \text{物量配定制 폐지전 미역原藻 販賣價格} \\ P_1 : \text{物量配定制 폐지후 미역原藻 販賣價格} \\ DD : \text{物量配定制 폐지전 需要曲線} \\ D'D' : \text{物量配定制 폐지후 需要曲線} \\ Qt : \text{總原藻 收買量} \end{array} \right.$

- 加工 및 輸出物量配定制 폐지로 인한 影響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輸出價格이  $\hat{P}_0$ 에서  $\hat{P}_1$ 로 하락하여 加工業體 剩餘는  $\triangle \hat{P}_0 s_a$ 에서  $\triangle \hat{P}_1 s_b$ 로 감소하고, 輸出業體 輸出手數料는  $(q_1 \alpha_1 - q_2 \alpha_2)$ 만큼 감소하게 될 것이다.

단,  $\left\{ \begin{array}{l} q_1 : \text{物量配定制 폐지전 確保物量} \\ q_2 : \text{物量配定制 폐지후 確保物量} \\ \alpha_1 : \text{物量配定制 폐지전 手數料率} \\ \alpha_2 : \text{物量配定制 폐지후 手數料率} \end{array} \right.$

## 2. 原藻收買 및 加工物量 配定 유지와 輸出物量配定制 폐지

- 加工部門에 있어서는 加工業體의 配定物量에 대한 잠재적 프레미엄이 상승하고, 輸出部門에서는 輸出物量 確保競爭으로 去來費用 上昇 및 手數料 引下를 초래함으로써 輸出業體의 收益이 減少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原藻 部門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 3. 原藻收買 및 輸出物量 配定 유지와 加工物量配定 폐지

- 加工部門은 경쟁 촉진으로 加工原價 上昇 및 輸出價格 下落을 유발하고, 그 결과 加工業體의 收益이 減少될 것이다, 輸出部門은 輸出物量의 確保가 용이하고, 輸出配定物量에 대한 잠재적 프레미엄이 상승할 것이다.
- 原藻部門에서는 加工業體로부터의 需要增加로 인하여 原藻價格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原藻收買, 加工 및 輸出物量配定 전부 폐지

- 加工 및 輸出物量配定 폐지시 발생하는 문제점 외에 현행 指定價格, 指定地域 原藻收買制度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生產漁民들의 所得은 크게 減少될 것이다.
- 또한 早期產 미역 위주의 加工, 輸出이 이루어짐으로써 晚期產 지역 어민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VI. 加工, 輸出制度 改善方案

### 1. 對日本 輸出物量合議制 폐지 추진

#### 가. 必要性

- 兩國의 輸出入物量合議制는 韓日 양국의 미역 生產 및 消費에 있어서 資源分配의 非效率性을 초래하므로 양국의 輸出入物量合議制 폐지가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生產者 剩餘를, 日本에 대해서는 消費者 剩餘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 또한 国内 利害集團間 갈등은 日本의 輸入物量合議制 실시로 인한 輸出物量의 한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國內物量配定의 폐지를 통한 自由競爭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日本의 輸入物量合議制 폐지가 전제가 된다.

#### 나. 物量合議制 폐지와 관련한 與件 檢討

- 韓日間 生產量의 安定化 추세 및 日本 市場內 國別製品의 差等化 定着으로 合議制 폐지시 日本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生產量 : 韓國 25~30만t, 日本 12~14만t  
 - 製品差等化 : 日本產(高級品), 韓國產(中級品), 中國產(下級品)
- 우리 나라에 대해서만 二重規制로 國家間 불평등을 지속하는 근거가 희박하다. 즉, 우리 나라 제품에 대해서는 高關稅(15%)와 더불어 物量合議制에 의해 輸入物量을 규제하고 있으나, 中國產에 대해

서는 현재 物量規制를 하지 않고 있다.

- 日本 輸入物量合議制에 기초한 國內物量 配定制度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國內產業의 競爭力 強化를 위해서는 配定制度의 계속 운영이 불필요하다.

#### 다. 推進方案

- 양국 水產廳長 會議 또는 貿易會談時 議題로 상정하여 공개적으로 논의하되 양국 民間會談時 輸出希望物量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物量合議制의 효과상실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한편 代案으로서 우리측의 輸出物量 自律規制方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또한 여의치 않을 경우 輸出物量 擴大, 關稅率 引下 및 中國產에 대한 物量規制 實施要求와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國內物量 配定制度의 개선

#### 가. 必要性

- 인위적인 物量配定은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資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配定物量의 利權化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國內 業體間 自由競爭의 촉진은 品質向上競爭을 통하여 不實業體 整備 및 輸出價格 上昇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나. 推進方案

- 物量合議制 폐지시 加工, 輸出物量 配定은 폐지하되 原藻 收買制度 는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生產漁民 자체가 영세하여 自立基盤이 미약할 뿐 아니라 지역간 生產時期 및 品質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반면 物量合議制 미폐지시 현행 物量配定制度를 유지하되 각종 補

完對策 실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예로서는 原藻 및 加工物量配定의 지역 간 균형을 위해 양물량 配定權者의 事前協議를 制度化하고, 作況에 따라 지역별 原藻物量을 再配定하도록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3. 간미역 製品의 品質向上과 高次加工 新製品 개발

#### 가. 必要性

- 지속적인 對日 輸出을 위해서는 高品質 製品의 生산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은 優良原藻의 확보 여하에 달려 있다.
- 또한 간미역 형태의 輸出限界性 극복과 生產物의 附加價值 提高 및 內需基盤의 확대를 위해서는 高次加工 新製品의 개발이 필요하다.

#### 나. 推進方案

- 優良原藻의 生產을 위해서는 適正施設量 준수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超過施設 방지를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示範養殖場을 조성,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적정시설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지속적인 養殖場 環境整備를 추진하되, 長短期的으로 구체적인 推進方案은 다음과 같이 달리 할 필요가 있다.

	短 期	長 期
施 行 主 體	政府 및 水 协	生 产 漁 民
施 行 方 案	○人力 및 船舶, 漁民이 제공 ○必要裝備 및 運營經費 국가 지원	清掃專用船, 人力 및 運營經費 전액 漁民 부담

- 한편 高次加工 新製品의 개발을 위해서는 施設費는 물론 技術開發 및 技術導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4. 協業加工業體의 直加工 유도

### 가. 必要性

- 直加工能力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加工物量配定은 配定物量의 轉賣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 나. 推進方案

- 直加工施設 미설치 漁村契에 農漁村 副業團地에 준하는 지금지원을 하되, 施設資金 確保 목적의 賃加工을 일정기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5. 違法行爲에 대한 制裁 강화

### 가. 必要性

- 違法行爲에 대한 제재조치 미이행은 制度改善 효과상실 및 政策不信 초래.

### 나. 推進方案

- 현행 制度에 따른 監督機關이 위법행위를 적발, 적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권고하고, 減量是為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減量基準을 설정함으로써 사전에 예방도록 한다.

## 6. 國內消費擴大를 위한 業界의 共同努力

### 가. 必要性

- 현재 輸出用을 제외한 殘餘生產量(20만㎘ 추정)의 消費를 확대함으로써 漁家所得 增大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나. 推進方案

- 미역消費擴大 弘報에 대한 각계의 共同努力 방안으로서 生產者團體에서는 미역 委販手數料의 일부를 弘報資金으로 활용하고, 加工業界는 原藻收買時 收買單價에 弘報費 일부 포함할 필요가 있다(1990년 kg 당 1원 既計上).

附錄

業務協議會 討論內容

日時：1990年 26日(火) 9:30~

場所：當研究院 別館 講堂

參 席 者 名 單

司 會：崔 洋 夫 (農經研 副院長)

發 表：朴 星 快 (農經研 水產經濟室長)

討 論：李 容 熟 (水產廳 貿易課長)

金 石 松 (水協中央會 貿易部長)

李 容 錫 (미역加工協會 會長)

具 碩 基 (미역加工協會 副會長)

吳 相 夏 (水產物輸出組合 海藻分科 委員長)

金 東 吉 (六起商社 代表)

金 宗 植 (莞島水協 組合長)

**司會 :** 더운 날씨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대일 간미역 수출제도 개선방안은 협안문제의 하나로서 수산청의 위촉을 받아 당연구원 수산경제실팀에서 지난 4개월간 연구를 해 왔다. 연구 내용의 성격상 연구결과를 제출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며, 특히 7월 초순 일본과의 민간회담을 앞두고 참고의견을 제시코자 오늘 회의를 마련하였다. 오늘 회의는 방청을 허락하는 공개적인 회의가 아니라 연구내용을 검토하는 실무적인 회의로서 이를 계기로 민간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의진행은 연구책임자인 수산경제실장으로부터 연구결과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들은 뒤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럼 시간절약을 위해서 자료의 현황 부분은 생략하고 가공, 수출제도의 문제점 부분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

### 朴星快 :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

**司會 :** 오늘 회의에는 생산어민 대표로서 군수협 및 수협중앙회가 있고, 가공업계와 수출업계를 대표해서 여러분이 참석하고 계신데, 발표내용 중에는 이들 계층간의 이해상충에서 오는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해당사자간 많은 이견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행의 한일간 물량합의제 존속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결정된 물량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조기산, 만기산 지역으로 구분되어 생산되는 생산량을 어민차원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다음 원조의 수매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수매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공업자와 수출업자간 물량배정에 있어 현행 제도를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유경쟁체제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 이슈마다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해결이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선 크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가 한일간 물량합의제를 둘러싸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으로 우선 이 문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이 분야에 종사해 오신

오상하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吳相夏** : 먼저 한일간 수출물량 합의제의 내력을 보면 일본으로서는 한 국산 미역이 진출할 경우 자국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으므로 양국 어민이 공존하자는 이유에서 본 제도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양국이 배우며 개선하는 자세로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수산물 수출조합이, 일본에서는 전 어연이 위임을 받아 수행해 왔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두고 볼 때 이 제도 하에서 우리측의 손해는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고, 가공기술의 향상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간미역 수출시작 당시는 우리 나라 해태 수출의 길이 막혀 어쩔 줄 모르던 때로서 전남 연안의 어촌은 극히 피폐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간미역의 대일 수출길이 트임에 따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일본 시장에 많은 량을 수출했었다면 제가격을 못받았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규제 속에서도 만족해 왔으나 최근 중국산이 일본시장을 크게 잠식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매년 민간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거대한 시장 일 뿐만 아니라 강대국으로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매년 우리도 중국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선처하겠다는 것으로 그치고 있고, 작년 경우 중국의 대일본 간미역 수출량은 7,000톤에 이르고 있어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스콤을 통해 여러 차례 현행 수출제도의 존속에 대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즉, 자유화 품목인 간미역에 왜 규제를 받고 있느냐는 것으로 이러한 비판을 감수한 이면에는 대일 수출량을 급격히 늘릴 때 시장 질서의 문란 및 새로운 규제유발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이해당사자간 손발이 안맞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자기 분야가 아닌 곳에 참여하려 하고 있는바, 실례로 수협중앙회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협업화 물량이라는 미명하에 기존 업체의 수출물량을 잠식해 가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진정으로 어민을 위한 것이라면 수협중앙회는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별도로 수지를 맞추는 방법을 동원,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아직 수출업체에서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내에

도 불구하고 매년 이해당사자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데, 각계가 모두 협력할 경우 현제도 자체를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경우 별도의 대책을 농경연이나 수산청에서 수립,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항간에는 가공·수출 퀴타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내 육심 층족에 굽굽하고 전체 발전에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살펴본 후 다시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司會** : 위원장 말씀을 요약하자면 현행 수출물량 합의제는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질서있는 행동과 의견일치가 전제된다면 나름대로 존속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현행 제도를 완전 개방해 버리는 것도 좋다는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물량배정제도의 폐지는 국내업자간 자유로운 일본시장 개척노력을 유발시키고 그 경우 과당경쟁이 야기됨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는 수출가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중국산 진출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직접 수출을 담당하고 계시는 육기상사 김동길 대표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金東吉** : 저희 수산물 수출조합을 대표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오위원장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단 배경설명에서와 같이 현재의 한일 양국간 합의물량제 존속이 나으냐, 폐지가 나으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의 합의물량제도는 일본의 경우 자국어민 보호 입장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본제도 시행 이전에도 생산, 가공, 수출해 왔다. 그러나 우리로서도 이러한 자유로운 상황에서 생산, 가공, 수출을 하다보니 많은 문제가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즉, 생산어민 입장에서는 가공업자의 횡포가, 가공업자 입장에서는 수출상사와의 거래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수출물량 합의제의 시행을 기본으로 해서 현행 제도가 출발했고,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현행 물량합의제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 것이다. 오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이 문제를 이해집단별 분쟁으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

것은 현행 제도가 생산분야, 가공분야 및 수출분야를 합리적으로 3분화 해놓았으므로 각자 자기 영역만 지킨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생산자가 가공에 참여하고 싶으면 가공협회에 가입하고, 가공업자가 수출하고 싶으면 수출조합에 가입하여 희망하는 분야에 종사하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현행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어민, 가공업자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각자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여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데, 어제 수출조합 주관으로 의견교환을 해 본 결과 수출업계와 가공업계간에는 전체적으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생산자단체인 수협의 의견은 다소 다른 것 같았다. 따라서 현재 입장에서 합의물량제 폐지는 바라지 않고 단지 일본측에 대하여 우리 나라 물량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중국측 물량도 규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 요구도 수년간 해 왔으나 큰 성과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중국산 물량규제를 관철시키지 못할 바에야 일본에 가서 물량을 합의해 주지 않고 한국에 와서 합의해 주더라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현재 15%로 되어 있는 고관세 문제도 있으므로 이들을 합쳐 관철시키는 차원에서 금년 회의의 의제순서를 바꾸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로 인해 회담이 결렬되더라도 합의물량 자체는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司會** :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 추세는 자유화 추세로서 우리 나라도 농산물 경우 쿠타와 관련해서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다소 불명확한 것 중의 하나가 민간단체인 한국의 수산물 수출조합과 일본의 전어련간 합의한 물량이 어느 정도 법적·행적적으로 구속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경우 일본파는 달리 관습적으로 이것이 구속력을 가지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비공식적 합의물량이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그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金東吉** : 그 말씀이 맞다. 양국간에 물량을 얼마로 합의하든 간에 실제 수출은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합의된 물량을 초과 수출할 경우 익년 수출물량을 삭감하도록 요구하여 삭감한 선례도 있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엔고현상, 보관료 부담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간미역 수입을 저연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이번 회담에서는 합의된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전량 수입하되 미수입분에 대해서는 전어련에서 수입하고 일본 국내물량은 자체해결하도록 주장할 생각이다.

또한 한일 정부간 입장의 차이로서 과거 스즈키 수상 출신지이며, 일본의 미역주산지인 이와데에 가서 중공규제, 관세인하 등의 요구를 했는데 일본업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입장은 다소 문제가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본자료에서도 이해집단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너무 깊이 간여하지 말고 업자 상호간 자율적 해결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목소리가 큰 집단만 이익을 보고 그렇지 못한 집단은 손해를 보아 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합의물량제가 존속할 경우에도 일본과 같이 각단체 자율에 맡겨 주기 바란다. 앞에서 오위원장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현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생긴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후 현재와 같이 정부가 깊이 간여하는 상황 하에서는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이 닥쳐옴에 따라 원만히 수습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업계의 주장이 여러 갈래로 크게 갈린다면 현제도를 폐지하되, 한 목소리로 나올 경우 존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司會 :**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출물량 자체가 정한 것이 아니고 민간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를 잘 지킨다면 가격 유지면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나 이것이 구속력이 없으므로 생산자나 가공업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국내에서는 지켜지기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출물량 협의를 지금까지는 수출조합에서 전담해 왔는데, 생산 및 가공업체 경우 수출관계업무를 잘 모르던 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생산단체가 커지고 가공업체 경우 발전과정에서 직수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출조합 주도의 수출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볼 때 생산자단체인 수협에서도 직선제 이후 생산어민 대변 입장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과거의 수출제도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 김종식 완도군 수협조합장께서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金宗植 :** 간미역 수출제도에 대해 연구를 해 주신 농경연 관계자 여러분

들께 완도 어민 및 동종조합 어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농경연에서 연구한 내용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미역의 경우 완도, 고흥, 진도, 양산 지역의 양식어민들에게는 사활이 걸려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없이는 정부, 양식어민, 수출 및 가공업자간 신뢰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먼저 수출면에서, 자료에서 보듯이 중국산 미역도 상당량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만 물량을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로서 가트(GATT)에 제소해도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 간미역가공은 언젠가 가내공업 형태로 나가야 할 것이다. 간미역가공을 위해서는 과거 보사부 식품허가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신고제로 가능하고 기술적으로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므로 어민 참여가 비교적 용이하나 수출물량을 배정받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 바이어가 신용장만 개설하면 누구나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일본시장 개방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만약 제한없이 우리나라 미역이 일본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일본 어민들은 미역양식을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썰어 말린 미역이나 간미역시장을 우리가 석권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개방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경제이론상 통제경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문제가 되나 그렇다고 당장 개방하더라도 생산어민들이 가공공장을 설치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질서를 잘 지키면서 가공, 수출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우리 완도수협 입장에서는 점진적으로 이를 개방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한편 수입국으로서 일본의 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수출물량으로서 24,800톤이 합의되면 이 물량 이상은 수출할 수 없게 하면서 그 이하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수출상사에 대한 문제이다. 제가 1979년도 간미역을 가공, 수출했을 때——그 때는 자유가공, 수출이 가능하던 때였으나——미역 원조를 kg 당 100원에 수매하더라도 kg 당 60원씩 마진이 있었다.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도 kg 당 수매가격이 128원에 불과한데, 이것은 큰 문제이다. 또한 당시에는 가공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전도금은 물론 소금 등에 대해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국내 물량배정제가 실시되면서 양자간 관계는 주종관계로 변화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수출상사도 기업인 이상, 이윤획득을 위해 서는 환로개척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배정제로 하다 보

니 이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하지도 않는다.

한편 가공업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완도 경우 면허면적에 비례하여 원조 수매물량을 배정하다 보니 면허는 있으나 실제 시설은 하지 않은 지역도 많이 배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때 가공업자는 이들 어민의 생산자 카드를 kg당 10원씩 주고 구매를 하고, 실제 3일 정도 정식으로 수매한 후 나머지 필요 물량은 일반구매하고 이 카드를 이용하여 그 물량을 상계한다는 것이다. 이때 면허만 가지고 있고 시설은 하지 않으나 수매물량을 배정 받은 어민들은 1년에 1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므로 매년 계속 배정받고자 하는데 물론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있다.

**司會** : 국내문제는 좀 있다 논의했으면 하고, 방금 얘기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수협중앙회에서도 많은 양의 간미역을 수출하고 있는데 김부장께서는 수협중앙회의 입장에서 현행 수출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金石松** : 현재 모든 국제무역관계가 자유화의 추세로 나가고 있다. 간미역은 자유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민이 아닌 일본 어민 보호를 위해 현행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출자유화를 찬성한다. 그러나 지난번 갯지렁이의 예에서 보듯이 이면결재 등을 통한 일본상인의 농간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것이 보완된다면 고품질 간미역의 생산은 물론 적자생존 법칙으로 국내생산조절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수출창구로는 생산자대표로서 수협중앙회가 일본 전어련에 수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에도 check price제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출자유화가 바람직하나 당장 실시한다면 혼란이 오므로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한 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司會** : 기본적으로 자유화방향으로 물량합의제를 폐지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다. 한편 가공업계에서도 가공에 그치지 않고 직수출을 원하는 사람도 많을 것인데 제한된 물량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미역가공협회 이용석 회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李容錫** : 연구제목을 보니 가공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년 이

령계 제도가 바뀌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도는 본래 일본 어민 보호목적에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한국어민이 보호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한일 양국 합의물량 24,800톤외에도 간미역이 상당량 수출되고 있고 둘째, 본제도를 통해 영세어민이 보호받고 있으며 셋째,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본제도 때문에 간미역 수출가격이 그런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한국 간미역의 가격이 kg당 350엔 정도이나 일본 국내가격은 1,000 엔 정도이다. 이렇게 양국간 미역의 차별화가 일본시장에 정착되고 있는 데, 우리의 내부갈등 때문에 큰 골격을 바꾼다는 것은 국가나 업계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 다음 수출면에서 제도권 밖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본 제도를 교란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현재도는 생산, 가공, 수출로 3원화 되어 있는데, 생산자의 가공참여도 제도권 내에서 주장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제도의 준수 여부 문제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생산자의 가공참여는 어민들에 대한 계도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과잉생산 및 밀식으로 인한 원조의 품질 저하는 해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원조의 품질향상에 주력하고 가공업자는 가공제품의 품질 향상에 주력한다면 본제도는 나무랄 데가 없이 훌륭한 것이다. 그럼에도 생산자를 앞세워 매년 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司會 :** 참고로 농협에서는 농민들이 가공, 수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주장, 판철되어 최근 협동무역회사라는 수출회사를 설립한 바 있는데, 이로써 자체 생산물을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가공부문에 농민들이 소외됨으로써 농민소득증대가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을 생각해 보니 간미역 경우 지금까지는 생산, 가공, 수출이 완전히 분할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각단체서 가공, 수출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도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자단체인 수협에서 직접 가공, 수출까지 참여하겠다고 나서고부터 기준 질서가 혼들리게 되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일부 시장참여의 제한이 가능했으나 그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사람에게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어떻게 질서있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李容錫** : 현재 가공물량 24,800톤은 전부 봉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참여 후 과거 실적이나 자체규정에 따라 가공 가능한 것이다. 지난번 수협중앙회에 가공물량 3,000톤을 할애했을 때 그 물량을 전매하지 않고 직접 가공, 수출만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년도 수협중앙회의 수출물량 중에는 직접 판매한 것은 약 3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수출업자가 수출대행하였다. 이렇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司會** : 수출부문에 있어 물량합의제는 기본적으로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자유수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단 현실적으로 수출가격의 유지, 안정에 문제가 있고 특히, 중국산의 진출을 감안할 때 일본시장 확보전략 수립과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자유롭게 수출하고 우리는 합의물량을 수출하는 것은 우리만 피해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는 현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유화를 전제로 한 일본시장 확대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金東吉** : 물량합의제 존속 및 시장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꼭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다. 일본의 합의물량 협의당사자는 전어련인데 일본의 가공업자 및 수입상들은 현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실수요자로서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수입 희망물량은 전어련이 한국과 합의하는 물량보다 2,000~3,000톤적다. 이렇게 볼 때 일본시장 질서도 항상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더욱 현제도가 존속될 필요가 있다. 즉, 현제도가 폐지되어 자유경쟁 하게 되면 나 자신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받는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司會** :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일본은 우리의 시장으로서 장기적으로 관리, 확보해 나가면서 국내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다.

**吳相夏** : 아까 부원장께서 하신 말씀 중 현재 수출물량은 민간단체끼리 합의한 것으로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구속력을 가지기 힘들지 않겠는

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해명을 드렸으면 한다. 현재 양국간 민간회담에 우리 나라 경우 수출조합, 가공협회, 수협이 협력, 의견을 조정한 후 수산청의 지시를 받아 임하고 있으며, 일본 전어련도 일본 정부의 지시를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양국 모두 정부가 표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민간단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司會** :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국제관계 업무에서 흔히 하고 있는 방식이다. 즉, 정부에서는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산청에서는 협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왔다는 것인데, 수출문제에 관해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무역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李容熟** : 토론회에서 정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한일간 물량합의제에 대한 근거는 발표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양국 수산청 장간 비공식합의에 의해 일본 수산청 유통과장과 한국 수산청 무역과장간 각서교환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비공식이면서 공식적인 회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간회담에 있어 과거는 수출조합이 주도했으나 현재는 생산자단체, 가공협회, 수출조합 3자가 합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하며, 이들간 사전협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정부에서는 훈령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간여하는 이유는 생산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이나 만족스런 해결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司會** : 최종적인 방침은 결국 수산청에서 만들어지겠으나 오늘 제시한 연구원의 의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시간관계상 수출물량 합의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국내 문제로서 원조수매, 물량배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 그럼 우선 김종식 조합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金宗植** : 수출행위의 근본은 생산이다. 따라서 연구원이나 정부에서는 생산어민의 의견을 비중있게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과거 간미역 수출은 자유제였으나 정치변혁기에 접어들면서 가공·수출 쿼타가 발생하였다. 즉, 10여년 전에 현재보다 발전된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퇴

보하였다. 물론 시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 쿼타제가 발생한 점도 있다는 것 시인한다.

그러나 10여년전 원조 수매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지금 128원이라는 것은 환율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매일본 물량합의제를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없는 한 현재의 물량 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음 가공분야에 대한 문제로서 원조 질의 불량으로 인한 감량사례도 있으나 겸근시 저율을 사용하지 않고 배단위로 중량을 파악하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물량이 감량되고 있다. 생산자 카드 판매와 관련해서는 공장 소재지 지역어민의 생산량을 수매하지 않음으로써 양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수매단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가공용 원조의 수매단가는 생산어민, 수협, 가공협회 3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산군 수협에서는 현행 제도에 의해 가공, 수매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조 생산량과 가공, 수출량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도지역 경우 평년 생산량 28만톤중 가공원료로 8만톤 정도밖에 소비되지 않으므로 현행 물량 배정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생산자 권익의 증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완도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잉여생산물 20만톤의 처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농업정책과 수산정책은 심한 불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농민의 쌀은 증산을 장려하고 실제 많이 생산할 경우 포상을 하고 있으나, 미역은 많이 생산하면 초과시설이다 밀식이다 하여 오히려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농토는 막대한 국고지원을 통해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 바다의 어장정리는 그렇지 못하므로 앞으로 어장정리시 국고보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면허제도도 문제가 있는데, 농업의 농토 경우 어떤 작목을 경작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반해 어장에는 면허시 양식품목이 단일품목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매우 불합리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양식면허에서도 생산단지별로 면허를 부여하되 복합품목면허를 가능도록 함으로써 천재지변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 협업가공에 있어서는 대부분 임가공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즉, 협업 가공공장 중에는 6~12톤의 물량을 배정받는 곳도 많은데, 적어도 60톤이상은 되어야 공장을 설치하더라도 경제성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제도 존속을 전제로 할 때 수

협에서 이들 협업가공공장에 대해 지도 및 자금지원을 하는 동시에 소량 배정받은 물량을 전부 회수,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가공한 후 이익금을 당해 지역에 환원한다면 기존 가공업체에 대한 경제세력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협업가공 물량배정권을 가공협회로 일원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협에서 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굳이 가공협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면 협업어촌계 가공협회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과잉생산물량 20만톤의 처분에 대해서는 가공원조 8만톤 수매시 kg당 3원씩 더 계상해 주고 정부에서 2억원 지원해 준다면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6천만원을 조달하여 이를 미역소비 확대홍보에 활용하고 싶다. 즉, 1억원 정도는 미역의 국민영양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집행하고, 4억원은 TV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비로 집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가공협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올해 이미 홍보비로 kg당 1원씩을 계상하고 있다. 다음 역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3,000톤에 달하는 군납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는데 현재 농산물은 대부분 농협창구를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반해, 수산물은 그렇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공급중인 간미역은 품질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교도소, 아동급식용으로 톳까지 공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양질의 미역을 수협을 통해 군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司會 :** 국내문제로서 물량 배정문제, 면허문제 등을 말씀하셨으나 면허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여기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따라서 국내시장, 즉 내수확대 문제와 가공 및 수출물량배정이 중심내용이 될 것인데, 후자에 대해서 생산자단체에서는 폐지입장을 개진한바 있다. 그런데 이 물량배정 문제는 이해관계자별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李容錫 :** 이상과 현실은 현재 너무 큰 격차가 있음을 느낀다. 현재 계획 생산을 하지 않고 품질향상에 노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시장을 확대 한다든가 국내 물량배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즉, 방금 김조합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8만톤의 생산량을 그나마 가공업자들이 많은 걸등 속에서도 그럭저럭 소비해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수출용 원조로서 8만톤에 대해서는 위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 일반 생산어민들은 대대로

어촌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수협은 더욱 생산을 지도하고 잉여부분을 제값받고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권익보호에 기여해야 할 것이나 현재 이것이 미흡하다. 그리하여 수출품이건 내수품이건 품질을 향상시켜 적정이윤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까 어장을 농지와 비교하여 몇 가지 사항을 견의했으나,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미흡한 바 이것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협업가공 물량의 배정권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가공협회에서 배정한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배정한 것으로서 배정결과에 대한 책임문제는 가공협회로 전가할 성격이 아니다. 즉, 지금까지는 정치가 등의 압력으로 배정한 것이다. 현재 협업가공물량은 치외법권적 성격으로 민의를 앞세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당연히 제도권 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司會 :** 협업가공사업은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수행하는 것인가?

**金宗植 :** 전어촌계원 참여하에 어촌계가 등기 가능한 곳에 공장을 지어 수행하는 것이다. 물량이 적다보니 유휴공장을 통해서나 타공장을 임대하여 가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회장님의 말씀 중 협업가공물량 배정과정중에는 정치권 등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씀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업을 하다 보니 물량이 적어 전어촌계원이 참여하기 어렵고 대표자 몇명 선정하여 이들이 직접 종사하되 이들은 일정 금액을 어촌계에 지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수협이 협업가공물량을 모아서 시범사업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가공업자의 기투자실적을 감안할 때 이를 당장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실시할 수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 어민들의 힘이 축적되면 이를 가내 공업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가공, 수출업자가 생산어민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적정소득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어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면 현행 제도가 존속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어민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단 물량 배정 문제를 자유화해 놓고 보면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또 한 가지 간미역 정부비축사업에도 엔급할 문

제가 있는데, 이를 위한 원조 수매단가가 너무 낮아 작년, 금년에 걸쳐 수매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조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司會** :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수협으로서 완도조합 신임 민선조합장의 노력여하에 따라 25개 협업가공업체가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가 달려 있는 것 같다. 즉, 수협이 직접 가공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 가공협회와 수출조합을 상대하고, 이를 통하여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한다.

**金宗植** : 그렇다, 또한 현재 완도지역 협업가공물량의 배정에도 문제가 많다. 즉, 완도에는 150개나 넘는 가공공장이 있는데 미역 미생산지에 과다 배정되고 미역 주산지에 과소 배정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이는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공질서유지 명목으로 협업가공공장이 가공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한다. 즉, 가공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협업가공이라는 기존개념이 상실될 뿐 아니라 어촌계의 대표성 자체도 소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부문을 해소해 가면서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나 자신 가교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李容錫** : 조합장이 일선 어민을 지도해 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귀원이나 수산청에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완도수협 25개 협업어촌계 가공물량 1,550톤을 완도수협이 소유하고 있다가 가공협회에 가입하여 자체규정을 따를 필요가 있다. 단 생산면에 있어서는 임의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병충해가 발생하여 실제 생산이 되지 않은 곳에도 일정량을 배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물론 현행 지침상 이 경우 회수하여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방금 말한 내용을 지침에 반영, 제도적인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 카드만 하더라도 기 배정된 지역에서 생산이 안되면 조합에서 작황에 따라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민선조합장에 대해 이를 탄력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지원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金宗植** : 지난번 완도지역에 수출용 가공원조가 80,000톤에서 76,600톤

으로 약 3,000톤이 감소, 배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진도지역에까지 가서 수매하고자 했으나 진도지역에 해당물량이 없어 부득이 지역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남아도는 완도지역 미역을 수매하고 수매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이것이 상부기관의 감사에 지적되어 실무자가 문책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것은 현행 배정제도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일본 바이어 측으로는 원조의 선도 유지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설사 진도지역 미역을 이용하여 가공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조수매에 대해서는 현행 면허면적 기준의 수매물량 배정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司會** : 수출용 간미역 가공문제, 물량 배정문제 등은 이제 거의 다 언급된 것 같은데 핵심적인 문제는 생산단체인 어촌계에 원조를 불합리하게 배정하고 있고, 외부압력 등에 의한 협업가공물량 결정, 사후관리의 미흡 등 인것 같다.

**李容錫** : 내수부문의 실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미역의 내수부문은 단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방치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수산물은 수협 위판장을 통해, 소위 강제상정제에 의해 위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역의 경우 결과적으로 수출용은 강제상장제, 내수용은 임의상장제에 의해 판단되고 있어 현행 수산법규와 모순이 되고 있다. 현재 모든 수산물의 임의상장제화는 다소의 문제로 인해 유보되고 있는데, 일종의 봉제경제 수단인 강제상장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활기 치운 것은 강제상장제, 활기 어려운 것은 임의상장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경쟁체계 하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具碩基** : 나는 순수한 가공업자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다. 개인적으로 현행제도의 존속을 전적으로 희망하는데, 지금까지 가공만 해 왔지 판매나 수출은 신경을 써 본 일도 없다. 물론 스스로 생산, 가공, 수출까지 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겠으나 판매능력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수입상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고 단합이 잘 되는 반면 우리나라 수출상사는 33개사나 되는데 현행 제도의 폐지로 인해 수출연계가 잘 되지 않을때 많은 가공업자는 도산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폐지, 개방하려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아까 완도 수협조합장께

서 하신 말씀중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으나 협업가공 면에서는 의견을 달리 한다. 제가 살고 있는 고흥에는 협업가공공장이 4개소 있는데, 이로 인해 나 자신의 가공물량이 260톤에서 147톤으로 감소했으며, 일반 가공업자의 평균 가공물량도 107톤, 금액기준으로 1억 5천만원에 불과하다. 과거 간미 역가공도 식품위생 허가를 득해야 가능했던 관계로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어 오지에 공장도 세우는 등 많은 투자를 했는데 현행제도를 폐지시 기존 가공업자는 갈 곳이 없고 공장처분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되 굳이 자유화해야 한다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자유화를 유도하되 응분의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처음 협업가공 시작시 물량이 50~60톤이 되어 채산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 모두가 환영했으나 점차 어촌계에 자중지란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경영주체가 없고 각자 목소리가 지나치게 다양했기 때문이다. 한번은 겸품과정에서 탈락되어 어촌계가 손해를 감수하기도 했다. 따라서 어촌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협업가공 물량을 개인 가공업체에 위탁가공하도록 하였다.

이해집단간 갈등은 생산자와 가공업자간 가장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생산자는 가공업자가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협의 위판기능은 무엇이며 위판수수료는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시 말해 생산자와 가공업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협직원이 나서서 조정하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부문이 많은데, 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감량을 많이 한다고 진정이 들어가 도에서 확인하려 온 일이 있다. 그 후 겸근현장에 관계자가 입회하여 겸근한 결과 내가 주장하는 바가 판철되었는데, 개인가공업자가 원조를 수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판수수료를 가지고 수협에서 임시직원이라도 고용했다면 이런 문제는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다.

우리 고흥지역에는 일본에서 좋은 품질의 미역을 도입하여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협력하여 품질개량한 결과 현재 없어서 못 팔 정도이다. 이렇게 수협도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스스로 존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선 행정도 크게 잘못되고 있는데, 고흥에서 가공해야 할 미역을 진도에서 수매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생산자카드를 이용하여 해결했는데,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했다.

**司會 :** 가공물량의 지역배정시 지역여건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수산청에서 참고 말씀 주시기 바란다.

**朴才俊** : 가공물량은 수산청에서 가공협회로 배정권을 이관, 가공협회에서 과거의 가공 및 수출실적, 질서문란 사항 등을 감안하여 업체별로 배정하는데, 이것은 수출물량도 유사하다. 반면 원조 배정은 가공공장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한 것이 아니고 생산여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면허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동향, 질서문란 사항 등을 감안, 수상청에서 도별로 배정하고 있다. 이 때 도는 다시 시군별로 배정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가공과 관련,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작년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재작년부터 완도에 병충해가 발생하고 밀식으로 인한 빈매, 카드판매 등이 문제가 됨으로써 어장정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완도어장의 면허면적은 다소 줄어들고 기타 진도, 신안군 등은 다소 늘어났다. 따라서 전남도에서는 10가지 대안을 상정,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완도군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결정한 것이 현재의 배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가공물량이 작년에 비해 3,000톤가량 줄어들고, 이것은 타지역에 추가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실제 진도지역에 수매할 물량이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현행 제도상 4월 15일 이후는 수출용 가공에 누구도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는데 4월 15일 이전에 완도 가공업자는 아무도 실제 수매를 하지 않고 4월 20일 이후 미역이 다 없어지고 나서 생산자 카드만 사자, 원조 배정물량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는데 진도 어민들은 이에 반대했으나 그에도 불구하고 완도수협에서 생산자 카드를 발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전남도 및 가공협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전남도로서는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체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물량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특히 사전에 가공업계의 실정을 감안하여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이 든다. 반면 가공업계로서는 단순히 과거 실적에 비례하여 물량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감안하여 다소 융통성있게 할 수는 없었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의 이와 같은 결과는 양쪽이 서로 독단적으로 물량을 배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司會** : 모든 질서가 배정의 논리에 따라 짜여져 있는데, 한쪽에서 그 기준을 바꾸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李容錫** :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전남 무안 경우 면허지는 다소 있으나 가공공장은 없는데, 여기에도 가공물량이 배정되었다. 가공업은 수

익성을 추구하는 산업으로서 원조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까지 가서 공장을 설치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완도공장의 원조를 진도에 가서 수매할 경우 그 제품은 불합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현재 진도 경우 미수출 물량만 하더라도 350톤 가량이 남아 있다. 물론 전남도가 지역별로 그렇게 물량이 배정되면 당해지역으로서는 일종의 이권이 발생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겠다는 입장에 서게 되며, 이후 수출불합격 원조로 판명되고 나서는 다시 제발 사달라는 입장으로 바뀌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무안과 같이 생산은 거의 없는데 가공 물량을 배정하는 것은 일선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司會** :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몇 분에게 한번씩만 더 발언기회를 드리겠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金東吉** : 간미역 산업은 3분업화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각 분야별로 본연의 임무를 다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다시 말해 생산면에서 원조의 질이 제품의 질을 전적으로 좌우하고 있는데, 원조 질이 낮을수록 가공비는 더 듦다. ‘미역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우리 나라 미역에 큰 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 우리 회사도 작년에 3,300톤을 수출했으나 현재 2,800 톤 밖에 수출하지 못했다. 일본의 산주고 지방의 고품질 미역은 대단히 비싸고, 그 보다 다소 질이 떨어지는 것도 수율면에서는 한국산보다 더 높다. 따라서 일본 가공업자들도 한국산 미역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완도 지역의 경우 어장은 전부 오염되고 병든 미역이 많은데 이것은 수협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4~5년전 가공업자들이 소금 구입시 더 부담한 돈으로 완도에 어장정리 목적으로 6억원 이상 배정한 적이 있다. 보도에 의하면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완도 경우 어장 철거시 시설물을 절단, 침하시키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미역 품질이 뛰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장정리를 위한 특별예산을 계상, 이를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과거의 원조 수매가격이 kg 당 100원이었는데, 현재도 128원에 불과하여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품질이 과거에 비해 못함으로써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완도수협에서는 원조가격에 대한 논의보다

는 고품질 미역 생산에 더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협업가공종사는 그 다음 문제이다. 또 가공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17년 이상 이에 종사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자신이 없으며, 특히 협업가공 경우 품질불량으로 수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대행가공하여 수출이 가능토록 해 준 경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 생산자는 생산에, 가공업자는 가공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될 때 어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정부 비축용 미역의 원조 생산비 산정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kg당 62원으로서 수출용 원조 128원과 비교할 때 양자간에 어떤 것이 적정수준이냐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출용 수매가격 128원의 고수 내지 인상문제보다 우선은 원조 품질향상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金宗植** : 앞에서 어느 분이 생산어민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협에서는 손쉬운 미역만 강제 상장하고 있다, 위판수수료는 어디에 쓰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강제성장제 경우 모든 수산물은 수산자원보호령에 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협은 이 과정에서 원조대금을 지불한 가공업자에 대해서는 수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생산어민들로부터 위판수수료를 받고 있다. 저희 완도수협의 경우 미역의 위판수수료가 연간 3억원 가량 되는데, 1억원은 위판인건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2억원은 조합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임의상장제에 대비하여 위판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다음 수협이 수수료까지 받으면서 가공업자의 물량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했는데, 협업가공물량을 더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기회에 가공업자에게 한 마디 반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가공キュ타가 kg당 500~1,000원으로서 무형자산화 또는 사유재산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완도만 하더라도 30개 이상의 수출물량 미배정 가공공장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기껏 kg당 10~20원의 마진을 보면서, 그것도 사정사정하여 수출キュ타 보유 가공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들도 가공협회에 가입하면 수출물량을 배정해 준다고 하나 그 양이 6~12톤에 불과한 실정으로 경제성이 없다. 따라서 가공업체는 자기들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어민입장에서도 생각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또한 제가 직접 참석해 보지는 않았으나

수매 원조가격 결정시 인상요인이 없다. 인상해 달라고 매년 크게 대립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다음과 같이 할것을 주장하고 싶다. 즉, 현재 인천에서 분쇄한 후 완도로 수송해 오는 수입 소금을 완도에서 직접 분쇄할 수 있도록 완도에 공장을 세우고 수송에 필요한 수송비 및 인건비를 절약하여 그 절약분을 원조 단가 인상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이 때 공장 운영은 완도수협에서 하되 인근 진도, 고흥까지 카바하고 양산 지역은 별도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수출용 원자재로서 수입시 현재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포장상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 가공업자에 공급해 줌으로써 가격인하분을 원조 수매가격 인상에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어장정리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수쿠버 다이버를 동원, 해저지질을 조사하였는데 어장이 산성, 노후화되기는 했으나 생각만큼 심하지는 않았다. 단암초가 있는 곳에는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금년에 어장정리비로서 수산청에서 2,000여만원 보조받고, 자체자금으로 4,000만원 조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혀 실효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유물질 제거에 주력하여 대대적으로 어장정리를 해나갈 생각으로 있는데, 이에는 가공업체는 물론 가능하면 수출업체 까지 동참하여 도와 준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마치막으로 협업가공물량 중에는 품질이 나빠 수출을 못한 적도 있으므로 우선 원조의 품질을 향상시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품질이 좋지 않으므로 낮은 가격으로 수매에 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李容熟** : 완도조합장에게 간단하게 문의하고 싶은-것이 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생산, 가공, 수출쿼터를 철폐하여 자유화하는 것이 좋고, 현단계에서는 현제도를 보완하여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옳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보완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金宗植** : 원조 수매과정에서 가공업자가 대금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도장을 찍어 와서 수협에서 수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나중에 수협에 와서 정산이 안되었다고 호소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 대해 수협에서 강력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예의 하나이다. 또 감량부분에

있어서 미역상태가 아주 나쁜 것은 합의하에 감량이 불가피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배를 이용하여 겉근하거나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상당량 감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물론 배가 한꺼번에 물릴 때 저울을 사용한 겉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서라도 정확한 겉근이 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를 요망한다. 또 카드판매 문제와 기타 어민의 편에서 볼 때 개선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 그리고 특히 가공물량 배정에 비해 원조배정이 부족했던 부문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저 자신도 어민들에게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金東吉** : 발표자료에 의하면 수출물량 폐지시 가공, 생산물량배정은 유지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폐지시 전체 부문의 물량배정을 동시에 폐지해야 할 것이다.

**司會** : 대단히 감사하다. 이러한 논의가 더 있었으면 한다. 한 마디로 잔미역은 매우 중요한 매일 수출품목의 하나로서 어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부딪치면서 여전히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나라 미역의 품질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이것이 경쟁력 약화, 가격정체로 연결되고 중국이라는 경쟁국가가 등장하면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됨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수매가격, 물량배정을 둘러싼 갈등을 더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래도 수출은 내수에 비해 가격이 좋았던 관계로 많은 어민들이 참여해 왔느냐 여러 가지 외부압력의 증가로 각종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저 자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외한이나 서로 싸우는 것은 서로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따라서 3자가 공존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생산, 가공, 수출이 지속적으로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가 이 회의를 통해 하나 느낀 점은 3자간에 허심탄회한 대회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출여건도 점차 변화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수협도 과거에 정부 관변조직으로 인식되었으나 직선제이후 요구사항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공업계와 수출업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수용하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지역적으로는 국가 문제인 동시에 완도라

는 특정 지역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므로 3자가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 아울러 수산청에서는 적절하게 조정하는 데 행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겠으나, 사회 분위기상 너무 깊이 개입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미역 산업에서 국내외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가 3자 공존의 선결조건으로서 이를 위하여 수협, 가공협회, 수출조합 등이 어장정화, 내수확대 등에 같이 노력하는, 미역 대책 기구의 공동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발전된 모습일 것이다. 아울러 수산청에서는 이들 기관의 전의사항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행정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간미역 수출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함에 있어 장시간 진지하게 말씀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정책연구 1  
간미역 대일 수출제도 개선방안

---

1990년 10월

發行人 許 信 行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録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章洋文化印刷株式會社

---

出處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断複製 및 複製는 禁止。